감사규칙

제　　정 2024. 11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전북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 내부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연구원의 운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감사범위) 감사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중요한 업무계획 및 집행현황
2. 회계 및 재산, 복무, 인사 등과 이에 관련된 사항
3.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4.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
5. 기타 연구원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

제3조(감사구분) ① 감사는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로 구분한다.

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연구원의 중요업무에 관하여 년 1회 실시한다.

③ 특별감사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.

제4조(감사독립의 원칙) 감사는 그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감사방법) ①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서면감사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상급 관계기관의 감사로 인하여 내부감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6조(감사관 등) ① 감사총괄은 연구본부장이 하며,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관을 둘 수 있다. 감사관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.

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③ 감사관을 보좌하기 위해 필요시 부감사관을 둘 수 있다. 부감사관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감사관의 자격)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보한다.

1.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2. 원장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제8조(감사자의 의무) 감사수행자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감사자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.
2. 감사자는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무단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.
3. 감사자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,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.

제9조(감사자의 권한 등) 감사자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.

1. 제장부 및 증빙서,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
2.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
3. 금고, 창고, 물품 등의 봉인
4. 회계관계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
5.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

제10조(감사계획의 수립) 정기감사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11조(감사실시) ① 정기감사는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시기, 감사범위 및 대상부서(자)의 준비사항 등을 감사 시행 1주 전에 감사대상부서(자)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특별감사는 피감사부서(자)에 사전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(감사대행실시)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 및 감사사항의 성질,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외부전문가 및 공인회계사 등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.

제13조(감사보고) 감사관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시정요구 등) 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.

1. 제도 및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
2.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
3. 관계직원의 징계의뢰 또는 변상요구
4. 관계직원에 대한 주의 촉구
5. 기타

② 제1항 제3호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고,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, 변상액 및 변상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5조(시정결과 보고)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서면으로 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이의신청) ① 감사의 시정요구 등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(감사수당 등) 원장은 외부 감사관에게 감사기간동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[붙임] 과 같이 감사수당 및 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세부사항)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〈2024.12.13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감사수당

구분	지급액	비고
일비 (1일 기준)	300,000원	

※ 소속기관 등이 전북특별자치도외 지역의 경우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실비지급